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손윤목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 충청북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의회사무처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정원을 둘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근거법령 정비근거법령 추가 (안 제1조)
 - (현행) 지방자치법 제90조, 제91조
 - (개정) 지방자치법 제90조, 제9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 근거조례 추가 (안 제5조)

- (현행)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개정)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4.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의회사무처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정원을 둘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붙임 :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